

민사분쟁해결에서 조정의 영향과 민사사건 배당에 관한 제안

황 덕 남*

[Abstract]

As the Civil Mediation Act has been revised four years ago, the system of standing mediation committee members was newly introduced. Mediation Center was established and the rights of standing committee members was vested in its comparable authority as a mediation judge in the the court. Sufficient time has passed since it was reviewed if there is a necessity for monitoring problems and process that was uncovered during the course of appraisal and implementation on civil dispute resolution orchestrated by non-judge mediator representing the standing committee members. Considering the procurements of non-judge mediators, it would be meaningful to not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of non-standing committee members may be recommendable. the exiting standing committee members may be divided into two groups such as standing and non-standing systems. Standing committee members will be responsible for specific work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anagement of mediating cases, recruits of mediators, education of mediators, and allocation of professional mediators. But implementation of specific dispute cases by non-standing committee members would be helpful for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civil dispute resolution. Among other things, because mediating works requires emotional consideration, it will lead working mediators to effectively acquiring requisite knowledge if they are categorized as being part of standing committee members. But we will have to review negative factors accelerated by accumulation of fatigue in dealing with mediating works.

*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한국법학원 상임이사,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目 次>	
I. 서론 II. 민사분쟁해결에서 조정의 영향 1. 조사의 배경 2. 조사방법 3.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정단계에서의 처리결과 4. 조정실패사건의 추이 5. 민사분쟁해결에서 조정의 영향에 대한 평가 6. 드러난 문제점	III. 민사사건 배당에 관한 새로운 제안 1. 새로운 사건 배당모델 제시의 배경 2. 사건배당에 관한 법령상 근거 3. 2012년 1심 합의사건 및 단독(소액제외)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통계 4. 새로운 민사사건 배당 모델에 대한 제안-3단계 사건처리 5. 새로운 사건배당에 관한 시뮬레이션 IV. 결어 및 과제

- 한글주제어 : 법원조정, 조정사건 배당, 조정의 영향, 민사분쟁과 조정, 민사조정
- 영어주제어 : court-mediation, ADR, civil dispute and mediation, mediation effect.

I. 서론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상임조정위원제도가 신설되고, 조정센터가 설치되어 상임조정위원이 조정담당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민사사건의 조정을 담당할 후 벌써 만 4년이 지났다. 이제는 상임조정위원을 대표로 하는 비법관 조정인에 의한 민사분쟁해결에 대한 평가와 그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민사분쟁해결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필자가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서 민사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면서 사건을 처리한 결과와 그 중 조정실패사건의 추이를 추적한 것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이것이 상임조정위원에 의한 분쟁처리절차가 감각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수량적으로 검증해 보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을 상임조정위원제도가 비법관조정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비법관 조정인에 의한 조정이 민사소송 전체에 적용되기 위하여, 조정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민사사건 배당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극히 실무자적 입장에서 작성한 개인적인 견해이다.

II. 민사분쟁해결에서 조정의 영향

1. 조사의 배경

조정센터 개소 이후, 최초 1년이 경과한 2010년 4월말경, 그 동안 조정에 실패한 사건들 중 관심이 있던 사건들에 대하여 소송 회부 후의 추이를 살펴보았더니,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소송과정에서 다시 판결까지 가지는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였다. 조정과정이 그래도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는 터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조정에서 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다 실패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법원 조정센터가 개소되고, 실질적으로 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한 2009. 4.말 이후 2010. 4. 30.까지 약 1년간(제1차년도) 직접 조정을 담당했던 사건들 중 조정에 실패한 사건(조정불성립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사건)들 중 추적 가능한 111건(조정불성립 52건, 이의신청 59건)을 추적하여 본 결과,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 52건 중 37건이 종결되었는데, 그 중 소장각하 6건, 소취하 11건, 조정회부한 심급에서의 화해·조정 2건으로 합계 19건이 판결선고 전 종국되었고, 이의신청된 59건 중 48건이 종결되었는데, 그 중 소취하 9건, 조정회부한 심급에서의 화해·조정 13건으로 합계 22건이 판결선고 전 종국되었음을 확인하였다(2010. 12. 31.기준임).

2010. 5. 1.부터는 조정을 경유한 사건들의 분쟁해결 양태를 추적하고자 처리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사건번호와 조정종결상태를 정리하여, 조정성공율(임의조정성립 + 조정갈음결정의 확정) 및 조정에서의 사건 종결율(조정성공사건 + 취하 등 기타 종국사건)뿐만 아니라 조정실패사건에 대한 추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정리하였다. 만약, 조정실패사건의 사건 종결 태양이 조정을 경유하지 아니한 사건들의 사건 종결 태양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에 따라 조정제도의 존재의의를 재평가하여 조정절차에서의 조정성공율 또는 사건종결율을 넘어 민사소송 운영의 원칙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가정하에 위와 같은 작업을 2년간 계속하였다.

2. 조사방법

대 상 : 조정센터 개소 2차년도(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와 3차년도(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처리한 모든 사건, 다만, 조정갈음결정의 경우 매차년도 마지막 날까지 결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므로, 위 사건들이 확정되었는지, 이의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이후의 시점일 수 있다.

조사기준 : 조정에 실패한 사건들이 소송으로 회부된 후의 추이를 보기 위하여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차년도 말일(4. 30.)이 속한 해의 연말(2차년도의 경우 2011. 12. 31., 3차년도의 경우 2012. 12. 31.)을 기준으로 소송진행상태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익년도 1월 내지 2월에 걸쳐 추적 및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3.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정단계에서의 처리결과¹⁾

〈표-1 조정단계에서의 처리결과〉

년도별	구분	총처리 건수(a)	조정성공 건수(b)	조정실패 건수(c)	기타(d)	조정단계 종결건수 (e=b+d)	성공률 {b/(a-d)}	종결률 (e/a)
2차 년도	신청	135	56	42	37	93	57.14%	68.89%
	회부	412	159	232	21	180	40.66%	43.69%
	전체	547	215	274	58	273	43.97%	49.91%
3차 년도	신청	115	48	44	23	71	52.17%	61.74%
	회부	389	139.5	225.5	24	164	38.22%	42.03%
	전체	504	187.5	269.5	47	235	41.03%	46.53%

1) 전체적으로 2차년도보다 3차년도에 처리건수가 감소하면서, 성공건수 및 성공률, 종결률 모두 감소하였는데, 조기조정이 확대되면서, 항소사건, 합의사건 및 소송진행중 회부된 사건 등이 조정센터에 집중적으로 배당되어 사건난이도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조정의 지속으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기간 동안 조정갈음결정의 확정률은 2차년도 44.63%, 3차년도 45.47%였다.

〈표-2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사건(수소법원 제외)의 조정단계에서의 처리결과〉

총처리 건수(a)	성공 건수(b)	실패 건수(c)	기타(d)	종결건수 (e=b+d)	성공률 {b/(a-d)}	종결률 (e/a)
7,260	2,238	4,388	634	2,872	33.8%	39.65%

4. 조정실패사건의 추이

조정에 실패한 2차년도의 274건, 3차년도의 270건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 회부 후의 처리결과를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조정실패사건 추이〉

년도별	구분	회부심급 판결까지(a)	회부심급 판결사건(b)	판결전 종결사건(c)	판결전 종결률(c/a)
2차년도	신청사건	35	17	18	51.43%
	회부사건	217	139	78	35.94%
	전 체	252	156	96	38.10%
3차년도	신청사건	37	19	18	48.65%
	회부사건	198	147	51	25.76%
	전 체	235	166	69	9.36%

5. 민사분쟁해결에서 조정의 영향에 대한 평가

(1) 위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조정경유 사건의 회부심급 판결전 종결 사건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4 조정경유 사건의 회부심급 판결전 종결 사건수 및 비율〉²⁾

년도별	구분	전체 조정 경유사건(a)	조정단계 종결건수		조정실패후 회부한 심급 판결전종결(d)	판결전 종결율((b+c+d)/a)
			조정성공(b)	기타종결(c)		
2차년도	신청사건	135	56	37	18	82.22%
	회부사건	412	159	21	78	62.62%
	전 체	547	215	58	96	67.46%
3차년도	신청사건	115	48	23	18	77.39%
	회부사건	389	139	24	51	55.01%
	전 체	504	187	47	69	60.12%
합 계	신청사건	250	104	60	36	80.00%
	회부사건	801	298	45	129	58.93%
	전 체	1,051	402	105	165	63.94%

(2) 한편, 위 라.항에서 본 조정 실패 사건의 회부 후 종결 태양을, 조정을 경유하지 않은 일반 사건들과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3차년도 조정실패사건들 중 1심 합의, 단독사건(소액제외)에 한하여 회부후 회부심급 판결전 조정, 화해된 사건과 판결사건을 추출하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제1심 합의, 단독사건(소액제외)의 조정, 화해된 사건과 판결사건을 추출하여³⁾ 대비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3차년도 조정실패 1심 합의·단독사건(소액제외)의 소송회부후 판결 및 조정·화해건 수〉

구 분	판결선고건수(a)	조정, 화해건수(b)	판결대비(b/a)
신청사건	14	7	50.00%
회부사건	87	27	31.03%
전체	101	34	33.66%

- 2) 조사시점에서 2차년도 22건, 3차년도 35건이 회부했던 심급에서 소송 진행 중이어서 종결태양이 조사되지 않았음에도 위 도표에서는 전체사건에는 반영되었으므로 위 사건들에 대한 종결태양이 반영되는 경우 판결전 종결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2011년도분은 사법연감에서 추출하였고, 2012년도 사법연감은 아직 공간되지 않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표-6 2011년 및 2012년 1심 합의·단독사건(소액제외)의 판결 및 조정·화해건 수 (사법연감에서 추출)〉

	연도별	판결건수(a)	조정, 화해건수(b)	판결대비(b/a)
전 국	2011년	189,021	48,741	25.79%
	2012년	188,481	50,940	27.03%
서울중앙	2011년	44,737	7,080	15.83%
	2012년	46,515	7,110	15.29%

(3) 결론

- 1) 조정을 경유한 사건들은 비록 조정에 실패하더라도 소송으로 회부된 이후 다시 취하, 조정, 화해 등으로 판결 전 종결되는 비율이 2차년도 38.10%, 3차년도 29.3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 2) 조정을 경유한 사건들은 64% 정도가 판결 선고 전에 분쟁이 종결된다.
- 3) 1심 합의, 단독사건(소액제외)에 한하여 조정에 실패하여 소송에 회부된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수와 조정, 화해된 사건수를 일반 사건들의 판결선고된 사건수에 대한 조정, 화해된 사건수의 비율과 대비하여 보아도 전체적으로 33.63%로 전국 25.79%(2011년), 27.03%(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15.83%(2011년), 15.29%(2012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상임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조정을 경유하는 것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민사분쟁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드러난 문제점

4년간 상임조정위원으로 조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증적으로 위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조정회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조정, 특히 비법관 조정에 의한 민사분쟁처리로의 방향전환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들로 인식되었다.

- (1) 전체 민사사건의 수에 비하여 비법관조정을 경유하는 사건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어 일반적으로 비법관에 의한 조정의 민사분쟁해결에의 영향력을 인지하기 어렵다. 예컨대,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본안사건과 조정사건은 다음 표와 같아서 조정신청사건을 포함하더라도 1심 사건의 경우

14 분쟁해결

접수건수대비 1.63%(4,493/274,812), 소액사건을 제외하더라도 6.07%(3,997/65,898)에 불과하고, 1심과 항소심을 포함하여도 2.19%[(4,493+1,656)/(274,812+6,338)], 1심과 항소심을 포함하면서 소액사건을 제외하더라도⁴⁾ 7.83% [(3,997+1,656)/(65,898+6,338)]에 불과하다.⁵⁾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민사본안 사건 전체 (합의 및 단독소액제외)		274,812 (65,898)	264,888 (62,948)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6,338	5,650	
조정 (수소법원 제외)	조정신청사건		1,238 1,141	
	회부사건	고등법원	89 91	
		지방법원 1심 (소액제외)	4,493 (3,997)	4,490 (4,059)
		지방법원 항소심	1,656	1,576
	합 계		7,476	7,298

(2) 소송사건의 조정회부가 여전히 재판부별 편차가 크고, 이에 대하여 양 측면에서 모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즉, ‘왜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야 하느냐?’하는 불만과 한 번도 조정을 경유하지 않은 항소심사건에서 ‘왜 이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한 번도 조정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유감이다.’라는 상반된 반응이 있고, 이는 모두 조정회부가 선별적이며,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면에서 동일한 불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박준서 전 서울법원조정센터 위원장님께서서는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다. 서울법원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들에게 2012년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여 본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소액사건의 항소심은 포함됨

5) 통계자료에 따라 조정사건의 수에 약간의 오차가 있음

법원별		민사재판부의 수 ⁶⁾	총 회부건수	조정회부한 재판부의 수	회부사건 편 차 ⁷⁾
서울고등법원		31	89	16	1 ~ 21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합의부	35	496	31	1 ~ 154
	1심 단독(소액제외)	53	3,271	49	1 ~ 178
	1심 단독(소액)	36 ⁸⁾	726	19	1 ~ 80
	항소부	8 ⁹⁾	1,656	9	72 ~ 28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회부한 재판부의 회부사건 수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별 \ 건수별	건수별				
	1 ~ 30	31 ~ 50	51 ~ 100	101 ~ 200	201 이상
1심 합의부	23	3	4	1	-
1심 단독(소액제외)	10	12	18	9	-
1심 단독(소액)	14	2	3	-	-
항소부	-	-	2	3	4

(3) 시기적으로 조정회부사건 수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즉, 인사인동 전후 등 법원의 조정회부 독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정회부 사건이 증가되었다가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회부사건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월별 조정회부 건수에 대한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회부 사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 월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420	324	588	641	590	545	542	516	519	520	595	445
2013년	463	464	1,281	1,125	1,072	677	880					

6) 2012. 12. 31. 법관사무분담표 기준

7) 조정회부한 재판부들의 회부사건 수의 편차임

8) 2013. 12. 31. 현재 35개 단독이나, 폐부된 부에서 회부한 건이 있어 36개부로 계산

9) 2013. 12. 31. 현재 8개부이나, 폐부된 부에서 회부한 것이 있어 9개부로 계산

16 분쟁해결

- (4) 다수의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 소송계속 여부, 다른 조정절차의 진행 여부에 대한 파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각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상반될 염려가 있다. 예컨대, 동대문 밀리오레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파생된 점포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관리비청구 사건의 경우 초기에 산발적으로 회부된 사건들에 대하여 여러 상임조정위원회에 배정되어 각각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회부시켰지만, 전체 사건규모가 파악된 후 전체 상임조정위원회가 공동 관심사로 수차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고, 선도사건을 정하여 진행함으로써 해결된 사례가 있는데, 위와 같은 다수 관련사건의 파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건 이후에도 다수 관련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별 회부 여부가 달라 동일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
- (5) 최근 조정센터의 확산과 상임조정위원 증원 등은 비법관조정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의 합리적 근거(조정이 민사분쟁 해결방법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만족도 조사 등) 제시가 미흡하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가 다분히 감각적 또는 정성적 평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재판부별 반응도 다르다.
- (6) 전반적으로는 비법관 조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법관조정 확대에 따른 민사분쟁해결에의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실증적 분석과 아울러 비법관 조정인의 확보와 육성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민사사건 배당에 관한 새로운 제안

1. 새로운 사건 배당모델 제시의 배경

- (1) 민사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규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별첨 도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 항소심에서의 조정회부는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의 이상과는 달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넘어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항소심 판결선고전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정개시 및 조정기관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법원에 의한 조정치중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이에 대한 재판당사자들의 문제제기로 상임조정위원 제도 등 비법관 조정

제도가 출발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개정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수소법원 조정 및 항소심 사건의 직권조정회부 등에 대하여 현행의 관행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물론, 당분간 전면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이지만), 민사조정에 관한 당초의 원칙으로 다시 회귀하여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당사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재판과 조정의 분리, 항소심 직권 조정회부의 배제 등을 다시 수용할 것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또한, 앞서 본 조정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어도 분쟁당사자들에게 절차에 있어서 기회균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요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현행 사건배당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정활성화 방안으로, ① 조기조정 회부 유도과 관리(워크숍, 간담회,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각 재판부에 조기조정 회부 유도, 정기적으로 조정회부 건수를 점검, 보고), ② 각 재판부별 조정회부의 목표건수 설정과 참여관과의 협동체제 구축(재판부별 조정회부의 월 목표건수를 설정, 제시, 조기조정회부에 관한 내규 제정), ③ 조정절차와 재판절차와의 연계, ④ 조정성공률 제고방안 마련(조정위원 간담회를 통한 연찬을 강화하고, 조정불성립 시에도 가급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비율을 높임, 기존의 조정위원회 조정 성과를 분석하여 조정위원 별로 평가를 시행하고 조정성공률 높은 조정위원과 외부연계기관에의 사건배정 비율의 확대를 추진하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조기조정 불성립 후 본래 재판부로 복귀한 사건 중 조정성립된 사건 비율 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3) 조정사건의 내용 및 질적 차이에 따른 전문가 조정위원의 배정(현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 1심 합의부 사건은 조정센터에 우선 배당한다는 원칙 외에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아서 일부 상임조정위원의 경우 담당하기에 격에 맞지 않는 사건도 없지 않고, 사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 조정위원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도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원의 민사사건 배당에 관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사건배당에 관한 법령상 근거

(1)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의 규정

제10조(배당실시의 시기 등) ① 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 날 업무 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협의가 종료된 후 즉시 실시한다.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위 예규에 따라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위 사건 배당은 위 예규 제14조에 따른 예외 사유 기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담당 재판부의 처리에 전적으로 맡겨지며,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는 한 조정절차의 경우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다.

(3) 새로운 사건배당모델은 따라서, 위 예규개정에 대한 법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3. 2012년 1심 합의사건 및 단독(소액제외)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통계

		접수	처리			
			소장각하	판결		
				합계	무변론	공시송달
전국	합의	58,125	504	34,708	자료미확보	
	단독	246,961	2,380	153,773		
서울	합의	15,006	148	9,688		
	단독	50,892	316	36,827		

위 사건들 중 소장각하 및 무변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 중 조정에서 종결되는 사건들을 뺀 나머지 사건들, 즉, 조정에 실패하는 사건들만을 대상으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면 재판부는 실질적 변론 및 증거조사와 판결에 보다 집중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새로운 민사사건 배당 모델에 대한 제안-3단계 사건처리

민사사건에 관하여 소장심사부, 사건처리부 및 재판부의 3단계 사건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소장심사 및 조기조정을 거친 후 재판부에서는 실질적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에 집중하도록 한다.

o 소장심사부

업무 : 소장접수후 피고에 대한 소장부분송달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 : 극소수 증견법관 및 사법보좌관을 배치하여, 법관의 결재하에 수인의 사법보좌관이 소장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합의, 단독 통합운영이 가능하고, 이 경우 더욱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건의 처리 : 소장심사후 주소보정 및 인지보정 등을 명하고, 불응하는 사건에 대한 소장각하/피고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공시송달 포함)이 이루어진 후 사건을 사건관리부로 이관한다.

효과 : 접수 사건 중 전국 0.95% $\{(504+2,380)/(58,125+246,961)\}$, 서울중앙지방법원 0.70% $\{(148+316)/(15,006+50,892)\}$ 해결/양은 많지 않으나, 재판부가 변론 및 증거조사에 집중

o 사건관리부

업무 : 피고에 대한 소장부분이 송달된 사건을 이관받아 피고의 답변서 제출후 사건을 분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 : 소수의 증견 이상 법관이 소장 및 답변서의 내용을 파악한 후 재판부 또는 조정회부 여부 결정

사건의 처리 : 무변론판결 및 공시송달 사건 종결

조정전담판사를 겸임하는 경우 조정기관 및 조정위원 결정도 가능하며,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의 관리기능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임

조정사건의 적절한 배당 및 관리가 가능함

비법관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처리사건의 적정 수 및 필요한 비법관 조정위원의 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효과 : 무변론 및 공시송달 사건 종결

조정회부사건의 약 40%가 조정단계에서 종결

조정실패한 사건들도 조정과정에서 쟁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사실상 변론준비절차 경유의 효과), 재판부에 회부된 이후 판결전 협상이 용이하다.

20 분쟁해결

○ 재판부

업무 : 변론 및 증거조사에 집중하여 판결 담당

운영 : 미국식 master calendar 방식을 취할 것이냐 현재의 재판부별 일정관리방식을 취할 것이냐는 이 단계에서 적용

5. 새로운 사건배당에 관한 시뮬레이션

(1) 무변론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새로운 사건배당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하여 법관의 업무경감 및 집중도 향상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및 단독(소액사건 제외)을 대상으로, 무변론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비율을 전체 접수사건의 약 15%로 하고,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율을 50%, 조정단계에서의 종결율을 40%, 조정미경유 사건의 재판중 조정, 화해율을 15%, 조정경유 사건의 재판중 판결전 종결률을 30%로 가정하고 재판부의 업무경감율을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소장심사부

- 담당법관의 수 : 3명(서울중앙지방법원 35개 합의부 및 소액을 제외한 민사단독 53개 등 민사담당법관 총수 158명 대비 1.9%)

- 사건종결률 : 0.70%

- 효과 : 사건종결률에 비하여 담당법관의 수가 많아 보이지만, 합의사건의 소장 심사를 대비하여 최소한 합의부 구성 법관의 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사건 종결 외에 소장심사 및 보정업무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효율성이 종결률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 소규모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건관리부와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임

○ 사건관리부

- 담당법관의 수 : 합의부 2개부 6명, 단독 10명(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담당법관 총수 158명 대비 약 10%)

- 사건종결률 : 15%(무변론 및 공시송달) + 16.86%{조정단계종결 (100-0.7-15) X 0.5 X 0.4} = 31.86%

- 효과 : 실질적 변론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약 1/3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조정사건의 통일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법관의 특성에 따른 사무분담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재판부

- 담당법관의 수 : 현재 민사재판부 구성법관 수의 약 88%가 접수사건의 약 67%를 담당하게 되어 법관의 사건부담률이 24% 정도 경감될 수 있음
- 효과 : 재판부의 법관은 변론 및 증거조사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경감률은 사건수의 부담률보다 훨씬 클 수도 있음/조정을 경유하여 온 사건들의 경우 판결전 종결율을 적용하면 재판부에 의한 판결선고율은 다음과 같이 전체 접수사건의 53.53% 정도로 현재 70.59%{(9,688 + 36,827)/(15,006 + 50,892)}보다 훨씬 경감됨/한편, 위와 같은 계산은 판결과 조정·화해·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이므로 그 이외의 사유(포기, 인락 등)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산정한다면, 판결선고율은 훨씬 더 감경될 수 있음

조정미경유 사건 판결율 : $(100-0.7-15) \times 0.5 \times (1-0.15) = 35.83\%$

조정경유 사건 판결율 : $(100-0.7-15) \times 0.5 \times (1-0.4) \times (1-0.3) = 17.70\%$

전체 판결율 : $35.83\% + 17.70\% = 53.53\%$

- (3)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법관조정인의 수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정회부사건의 수 : $(15,006+50,892) \times (100-0.7-15)\% \times 0.5 = 27,776$ 건

○ 현 상임조정위원 1인당 연간 처리건수 : 월 50건 \times 12개월 = 600건/연

○ 현 체제에서 필요한 상임조정위원의 수 : $27,776/600 = 46.3$ 명

○ 대안

- 상임조정위원을 상근과 비상근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하여, 상근 상임조정위원은 사건관리부에서 조정에 회부한 사건들을 관리하여 일반조정위원, 비상근 상임조정위원, 전문가 조정위원 등에게 조정사건 배부
- 이 경우, 조정전담판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극소수로 운영할 수 있고, 상근 상임조정위원의 경우 상당기간 조정업무에 전념함으로써(현재 법원도 조정전담판사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경향) 조정사건에 대한 분류 및 조정위원의 특성파악으로 적절한 조정위원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조정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 조정전담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음

IV. 결어 및 과제

1. 비법관 조정이 민사분쟁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

22 분쟁해결

안이며, 특정 조정위원이 처리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다양한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운영자는 제도변경에 신중하여야 하겠지만, 법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사건당사자들에게 분쟁해결에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 민사조정법 및 민사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법관의 권한, 특히, 사건 당사자에 대하여 절차적인 면에서 조정 기회의 향유 여부가 지나치게 재판부의 성향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3단계 사건 배당이 복잡할 수도 있으나, 법원의 사건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어 기록 분실 등 염려는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국, 비법관조정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제안이므로, 이에 따른 조정인 발굴방식 및 육성(교육과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정인의 수를 보다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산정하여 볼 필요도 있다.
5. 비법관조정인 확보라는 면에서, 비상근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상임조정위원을 이원적으로, 상근과 비상근으로 운영하여, 상근위원의 경우 조정사건관리·조정위원발굴·조정위원교육·전문가조정위원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비상근위원의 경우 구체적 사건의 조정실시에 임하게 하는 것도 조정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조정업무가 감성적 배려를 필요로 하여 현재의 상임조정위원제도처럼 상근으로 조정에 임하는 경우 업무의 숙지도가 높아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도 있겠지만, 업무의 지속으로 인한 피로도의 누적으로 사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면이 없는지도 검토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표 7. 민사조정법 제정 이전 민사분쟁의 조정에 관한 근거법규 대비표

		차지차가조정법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시행기간		1962.1.15.~1990.1.13. (법률폐지)	1970.12.31.~1990.1.13. (조정관련조문삭제)	1973.2.24.~1990.1.13. (조정관련조문삭제)
조정대상		차지차가관련 분쟁 (제2조)	지방법원단독판사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제7조)	소액사건(제2조)
조정개시	당사자의 신청	O(제2조 제1항)	O(제7조)	단독판사 심판권에 속하므로 간이절차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가능
	재판부의 직권회부	O(제8조)	근거없음	O(제12조)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제5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8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12조 제2항)
	조정위원회	O(제19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8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12조 제2항)
	재판부	근거없음	근거없음	O(제12조 제3항)
	절차의 공개	비공개(제13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8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12조 제2항)
강제조정	대상	조정위원회 사건 (제33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8조)	조정불성립한 모든 사건 (제13조 제1항)
		기관	법원(제33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8조)
	불복방법	14일 이내 즉시항고 (제33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8조)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내 이의신청(제14조)
조정의 효력	재판부	근거없음	근거없음	재판상 화해의 효력 (제12조 제2항)
	조정담당판사	재판상 화해의 효력 (제17조, 제33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8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제12조 제2항)
	조정위원회	법원의 인정 결정이 있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제31조)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차지차가조정법 준용
	위원회	*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불인가결정(제30조)	(제8조)	(제12조 제2항)

표8. 민사조정법의 개정연혁

			제정당시 (1990.1.13.)	개정내역	현행
조정대상			민사에 관한 분쟁 (제2조)		민사에 관한 분쟁 (제2조)
조정 개시	당사자의 신청		O(제2조)	2012. 1.17. 신설- 독촉절차의조정이행	O(제2조) 독촉절차의 조정 이행신청 (제5조의2,3)
	재판부의 직권회부		제1심-쌍방 동의 있을 때 가능 (제6조)	1992.11.30. 개정- 제1심 직권회부가능 1995.12. 6. 개정- 사실심변론종결시 까지 1998.12.28. 개정- 항소심판결선고전 까지	항소심판결선고전 까지 직권회부가능 (제6조)
조정 기관	조정담당판사		O(제7조 제1항)		O(제7조 제1항)
	조정위원회		O(제7조 제2항)		O(제7조 제2항)
	재판부	근거 없음		1992.11.30. 신설-수소법원 조정가능	O(제7조 제3항,
				2001.1.29. 신설-수명법관· 수탁판사	수명법관,수탁판사 포함)
상임조정위원	근거 없음		2009.2.6. 신설-상임조정위 원 신설	O(제7조 제2항)	
조정 위원	일 반	위 촉 자	지방법원장, 지원장(제9조) 당사자 합의로 선정(제9조)	1995.12. 6. 개정- 고등법원장,지방법 원장, 지원장	고등법원장,지방법원 장, 지원장(제10조)
		자 격	학식과 덕망 있는 자(제9조) 결격사유 (규칙제3조)	1992.11.30. 개정- 임기2년	학식과 덕망 있는 자, 임기2년(제10조) 결격사유(규칙 제3조)
		역 할	조정위원회 구성 (제8조) 관계인 의견청취 (제10조)		조정관여, 의견청취 등 (제10조)

조정 위원	상 임	위 촉 자	근 거 없 음	2009.2.6. 신설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제10조)
		자 격		2009.2.6. 신설-변호사, 조정위 원규칙 *15년 이상 법률가 (규칙 제2조의2)		변호사·조정위원규 칙(제10조)
		역 할		2009.2.6. 신설-조정담당판사와 동일		조정담당판사와 동 일(제7조 제3항)
절차의 공개		비공개 (제20조)	1992.11.30. 개정- 비공개가능		비공개 가능(제20조)	
조정갈음 결정	대 상	상 당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건(제30조)	1992.11.30. 개정-상당 한 이유 없는 한 결정		상당한 이유 없는 한 결정(제30조)	
	기 관	조 정 담 당 판 사, 조 정 장 (제30조)	1992.11.30. 개정-조정 담당판사,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제30 조) 및 동일권한을 가진 자	
	불 복	2주일내 이의신청 (제34조)		2주일 내 이의신청(제34조)		
조정의 효력	조정담당판사	재판상 화해의 효 력(제29조)		재판상 화해의 효력(제29조)		
	조정위원회	재판상 화해의 효 력(제29조)		재판상 화해의 효력 (제29조)		
	재판부	근거없음	1992.11.30. 개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			
	상임조 정위원	근거없음	2009.2.6. 개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			